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 법인	법인 명칭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 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처리기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